

|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04969    |
| 의 퇴 인  | 신영대의원      |
| 회 답 일  | 2024.11.7. |
| 추 계 번호 | 24E4726    |

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등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  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-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4조 80억원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<br>적용기한 연장(안 제126조의2제1항) | -40,080 |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26조의2제1항,<br>제2항<br>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<br>대한 소득공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영유아놀이시설 사용분에 대한 공제 추가, 적용기한 1년 연장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(현행)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</li><li>- (개정안) 영유아놀이시설 사용분에 대하여 30% 소득공제율 적용,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</li></ul></li></ul>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26조의2제1항<br>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 | ○    | 추계<br>(일몰 연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126조의2제2항<br>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 | ×    | 기술적 사유로 비용추계 곤란<br>(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에 대한<br>공제 추가)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개정안의 부칙을 반영하여 2025년 중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

- 현행 일몰기한이 2025년까지이므로, 일몰기한 1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 -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가 이루어지는 2027년에 세수효과 발생(징수 기준)
-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
  - 해당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자 중 영유아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자의 수, 이들의 연간 지출금액 등에 대한 자료 필요하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고,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
#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감면 실적

- (감면실적) 2024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4조 1,183억원임<sup>1)</sup>

- 2021년과 2023년 조세지출액은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치로, 각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,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함에 따라 해당연도 조세지출 실적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

[표 2]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액

(단위: 억원, %)

|       | 2018<br>실적       | 2019<br>실적      | 2020<br>실적      | 2021<br>실적       | 2022<br>실적       | 2023<br>실적       | 2024<br>잠정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조세지출액 | 21,176<br>(14.2) | 22,553<br>(6.5) | 24,698<br>(9.5) | 31,882<br>(29.1) | 31,675<br>(-0.6) | 39,458<br>(24.6) | 41,183<br>(4.4) |

주: ( )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## (2) 추계 방법

- 2020년(2019년 귀속) 조세지출 실적치를 바탕으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  -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통해 현재 2024년(2023년 귀속) 조세지출 잠정치까지 공개되었으나, 2021년 이후 매년 한시적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, 제도변화가 미미하였던 2020년(2019년 귀속) 조세지출 실적치를 이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  - 2020년 조세지출 실적치를 기준으로, 향후 조세지출 실적치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 증가율 및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(소비자물가 상승

- 1) ① [표 2] 기준 ① 2018년(2017년 귀속)부터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고, 중고자동차 구입분이 공제대상에 포함됨
- ② 2019년(2018년 귀속)부터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30%에서 40%로 인상되었으며,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·공연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신설됨
- ③ 2021년(2020년 귀속)에는 3월과 4~7월기간 동안 사용액에 대하여 각각 30~80%, 80%의 공제율을 적용(기준 15~40%)하고, 총급여규모별 공제한도를 30만원 확대함
- ④ 2022년(2021년 귀속)에는 공제항목별 공제율이 정상화(15~40%)되고,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% 공제율 추가 적용
- ⑤ 2023년(2022년 귀속)에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, 5%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각각 20% 추가공제 적용
- ⑥ 2024년(2023년 귀속)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('23년 하반기 사용분부터 적용) 추가, 공제한도 통합 등 조정, 2023년(4~12월)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50%, 2023년(1~12월)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%로 한시 상향조정

를)을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-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은 2018~2022년 연평균 증가율(4.8%)로 증가하고,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<sup>2)</sup>을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[표 3] 기준연도 이후 세수효과 증가율

| (단위: %)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2025 | 2026 |
| 소비자물가상승률 (A)              | 0.5  | 2.5  | 5.1  | 3.6  | 2.5  | 2.1  | 2.0  |
| 신용카드 소득공제<br>적용인원 증가율 (B) | 2.2  | 5.0  | 5.4  | 4.8  | 4.8  | 4.8  | 4.8  |
| 합계 (A+B)                  | 2.7  | 7.5  | 10.5 | 8.4  | 7.3  | 6.9  | 6.8  |

주: 1.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까지는 실적치, 2024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  
2.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 증가율은 2022년까지 실적치, 2023년부터 2018~2022년의 연평균 증가율(4.8%) 사용

### (3) 추계 결과

-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7년 4조 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
  - 2020년 조세지출 실적치를 기준으로 2020년 이후 기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할 경우 2026년 귀속 기준(2027년 연말정산 시 세수효과 발생) 재정수입 감소는 4조 8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| (단위: 억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   |
|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<br>적용기한 연장(안 제126조의2제1항) | -40,080 |

2) 2023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「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~2028」('24.10.)의 전망치 활용

## 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 V. 작성자

☐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세제분석1과  | 박지원 | 박연서 |

☐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  |
| 박지원 | 02-6788-4662 | jwpark1209@assembly.go.kr |